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2

심의일자	2017.11.21.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자양동 690번지일대 주택건설사업 / 광진구 자양동 690번지일대		
의결번호	2017-31-4	심의결과	조건부(보고)의결
<p>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 심의</p> <p>■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『경관법』 제28조 및 『건축법』 제4조에 의한 경관·건축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>&lt; 건축 분야 &gt;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계획분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잠실대로 남측과 자양로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입면디자인의 대안을 검토 제시 하기 바람.(한강변 관리지침 준수, 글래스 월은 빛 반사 고려)</li> <li>○ 주출입구 앞 교차로 험프는 보행자를 고려하여 당초 안(도시건축공동위)대로 계획 하기 바람.</li> <li>○ 동·서 공공보행통로 선형, 규모, 기능을 당초 안(도시건축공동위) 이상으로 계획하고, 준공 후 인근 주민들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검토 바람.</li> <li>○ 지형순응계획에서 지하1층 주민운동시설의 레벨을 낮추고 주민운동시설 앞 인도는 도로 쪽으로 설치를 검토 바람. - 근린생활시설과 주민운동시설 사이 출입통로는 개방형으로 접근성을 향상 바람.</li> <li>○ 주동 접합부의 사공간이 과다하므로 개선하기 바람.</li> <li>○ 주변 학교와 저층 주거지에 대한 일조 및 공사소음에 의한 민원 방지대책을 검토 바람.</li> <li>○ 지하주차장 램프 위 지붕 구조물의 디자인 계획을 재검토 바람.</li> <li>○ 105동 태양광 패널은 옥탑으로 인한 음영 영향이 없도록 배치 바람.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구조분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02~105동의 MASS 연결부는 뒤틀림을 고려한 내진설계를 면밀히 검토 바람. - 계속 -</li> </ul>			

2017.11.21.  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2

심의일자	2017.11.21.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자양동 690번지일대 주택건설사업 / 광진구 자양동 690번지일대		
의결번호	2017-31-4	심의결과	조건부(보고)의결
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 심의			
<b>&lt; 건축 분야 &gt;(계속)</b>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방재분야			
○ 휘트니스센터 좌측(출입구 반대측)에 비상구를 설치하기 바람.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조경분야			
○ 식재 수목의 성상을 수정하기 바람.			
- 쥐똥나무 → 낙엽관목, 철자화는 관목으로 보고 수고를 줄이도록 검토(수고 2.0m는 시장성 확인 필요)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교통분야			
○ 비상차량 동선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람.			
- 비상차량(소방차 등) 진출입 도로 폭원은 여유 있게 확보하고 직진으로 진입 및 주행이 가능하도록 선형을 조정			
- 비상차량 조업가능 공간을 확보하고 회차가 가능하도록 수정			
- 위 사항이 지상1층에서 불가능한 경우 자양로에서 휴게정원으로 직접 접근가능 하도록 비상차량 출입로를 확보하는 방안 검토. 끝.			

2017.11.21.  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